

2019. 4. 3. 재·보궐선거 확정상황

(2019. 2. 7. 현재)

구분	시·도	선거구명	선거구역	실시사유		사유확정일 (사유발생일)
				대상자 (소속정당)	사유	
국회의원 (2)	경 남	창원시 성산구	창원시성산구 일원	노 회 찬 (정의당)	사 망	'18. 7. 25. ('18. 7. 23.)
		통영시 고성군	통영시·고성군 일원	이 군 현 (자유한국당)	피선거권 상실	'18. 12. 27. ('18. 12. 27.)
기초의원 (3)	전 북	전주시라	전주시완산구 서신동	서 선 희 (무소속)	피선거권 상실	'19. 1. 8. ('18. 12. 27.)
	경 북	문경시나	문경시 점촌2동, 점촌4동, 점촌5동	이 상 진 (자유한국당)	사 직	'18. 11. 27. ('18. 11. 27.)
		문경시라	문경시 호계면, 점촌1동, 점촌3동	이 승 준 (무소속)	피선거권 상실	'19. 1. 8. ('19. 1. 3.)

2019. 4. 3.(수) 실시 재·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

시행일정	요일	실시사항	기준일	관계법조
		인구수 등의 통보	인구의 기준일 후 15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)까지	법\$4, \$60의2①, 규\$2①②
		선거비용제한액 공고·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	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)까지	규\$51①②, 규\$26의2③
'18. 12. 4.부터	화	예비후보자등록 신청 [국회의원, 시·도지사 및 교육감선거]	선거일 전 12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터	법\$60의2①
'18. 12. 21.부터	금	예비후보자등록 신청 [시·도의원, 구·시의원 및 장의 선거]	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터	법\$60의2①
'19. 1. 3.까지	목	각급선거관위 위원,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, 주민자치위원, 통·리·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	선거일전 9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)까지	법\$60②
1. 20.부터	일	예비후보자등록 신청 [군의원 및 장의 선거]	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터	법\$60의2①
2. 2.부터 4. 3.까지	토 수	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	선거일전 6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터	법\$86②
3. 4.까지	월	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	선거일전 30일까지[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구지방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]	법\$53②③
3. 12.부터 3. 16.까지	화 토	선거인명부 작성	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	법\$37, 규\$10
		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		법\$38, 규\$11
		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		법\$65⑤
3. 14.부터 3. 15.까지	목 금	후보자등록 신청 (매일 오전 9시 ~ 오후 6시)	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	법\$49, 규\$20
3. 20.까지	수	선거벽보 제출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	법\$64②, 규\$29④
3. 21.	목	선거기간개시일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	법\$33③
3. 22.까지	금	선거공보 제출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	법\$65⑥, 규\$30⑤
		선거벽보 첩부	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	법\$64②, 규\$29②⑤
3. 22.에	금	선거인명부 확정	선거일전 12일에	법\$44①
3. 24.까지	일	거소투표용지 발송(선거공보, 안내문 동봉)	선거일전 10일까지	법\$65⑥, \$154①⑤, 규\$77
		투표안내문(선거공보 동봉) 발송	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	법\$65⑥, \$153①, 규\$76
3. 29.부터 3. 30.까지	금 토	사전투표(매일 오전 6시 ~ 오후 6시)	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	법\$155②, \$158
4. 3.	수	투 표(오전 6시 ~ 오후 8시)	선거일	법 제10장
		개 표(투표종료후 즉시)		법 제11장
4. 15.까지	월	선거비용 보전 청구	선거일후 10일까지(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)	법\$122의2①, 민법\$161, 규\$51의3①
6. 2.이내	일	선거비용 보전	선거일후 60일이내	법\$122의2①, 규\$51의3②

관 계 법 조 문

공 직 선 거 법

제49조(후보자등록 등) ①~③ (생략)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1.~3. (생략)

4. 최근 5년간의 후보자,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(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 자녀를 제외한다)의 소득세(「소득세법」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)·재산세·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(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)에 관한 신고서.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.

5.~6. (생략)

⑤~⑦ (생략)

⑧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, 등록신청서·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·선거권자의 추천장·기탁금 및 제4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 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. 다만,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,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,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.

⑨~⑮ (생략)